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11
----------	-------

발의연월일 : 2026. 10. 1.

발 의 자 : 백승아 · 문진석 · 윤후덕
김한규 · 김문수 · 문정복
임미애 · 신정훈 · 박은정
염태영 · 남인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습권 침해, 우울·불안, 사이버폭력 및 유해정보 노출 등 과도한 이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아동·청소년은 자기통제력과 위험판단 능력이 발달하는 단계에 있음에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개인의 이용기록과 관심사를 분석한 정보추천시스템을 통해 콘텐츠 이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청소년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행태 등을 분석한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

로써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및 제3호의5,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76조제
4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3호의4 및 제3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소셜미디어서비스”란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작성·게시·공유하고, 그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다른 이용자와 관계를 형성하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5.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이란 이용자의 개인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또는 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별로 정보의 노출여부·순서 또는 방식을 결정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42조의4 및 제4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확인) 소셜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수 및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의5에서 같다)는 이용자가 계정을 개설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그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의5(청소년에 대한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의 제한) ① 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는 19세 미만인 이용자의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직접 선택한 계정의 정보,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검색어에 따른 검색 결과 또는 정보를 시간순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의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4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2조의4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4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의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① ----- -----. 1. ~ 3의3. (현행과 같음) 3의4. “소셜미디어서비스”란 이 <u>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u> <u>부호·문자·음성·음향·화</u> <u>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작</u> <u>성·게시·공유하고, 그 정보</u> <u>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u> <u>는 방식으로 다른 이용자와</u> <u>관계를 형성하거나 상호작용</u> <u>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u> <u>통신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것을 말한다.</u> 3의5.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 <u>스템”이란 이용자의 개인정</u> <u>보, 서비스 이용기록 또는 이</u> <u>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u> <u>별로 정보의 노출 여부·순서</u> <u>또는 방식을 결정하는 자동화</u> <u>된 시스템을 말한다.</u>
<u><신설></u> 4. ~ 13. (생략) ② (생략)	4.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2조의4(아동·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 연령 확인) 소셜 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수 및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의5에서 같다)는 이용자가 계정을 개설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의5(청소년에 대한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의 제한) ① 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는 19세 미만인 이용자의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직접 선택한 계정의 정보,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검색어에 따른 검색 결과 또는 정보를 시간순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4. ~ 24. (생략) ⑤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u>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의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76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2조의4를 위반하여 <u>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u> 3의3. 제4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u>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한 자</u> 4. ~ 2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